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2. 1(목) 10:00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문화환경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76호
- 나. 제 출 자 : 고성미의원
- 다. 제출일자 : 2022. 11. 10.
- 라. 회부일자 : 2022. 11. 10.

2.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 9. 25. / 제정 2021. 9. 24.)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 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에서 제3조).
- 나. 구청장·사업자·구민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에서 제6조).
- 다. 탄소중립비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체계를 규정함(안 제8조에서 제11조).
- 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에서 제20조).
- 마.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에서 제29조).
- 바.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 사.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에서 제35조).
- 아. 의회 보고 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

자. 기존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폐지함(안 부칙).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녹색성장을 도모하여 우리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6개의 장, 3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장(제목)	내 용
제1장(총칙)	-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구와 구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 감축목표 설정,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등
제3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탄소중립도시 추진 산재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녹색교통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지역물관리 사업, 적응대책 수립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 확산)	- 탄소중립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교육·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기후대응기금 설치, 의회 보고
제6장 (보칙)	-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표창 등

1) 안 제1장 총칙(안 제1조~제7조)

- 조례 목적, 기본원칙, 구청장·사업자·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함
(법 제3조, 제4조, 제5조 근거)

2) 안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안 제8조~제11조)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 수립, 추진 상황 점검 등을 규정함.(법 제8조, 제12조, 제13조 근거)

3) 안 제3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안 제12조~제20조)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법 제22조 근거)

4) 안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용 시책(안 제21조~제30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탄소중립도시 추진, 녹색건축물/녹색교통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기후대응 적응대책 수립 등을 규정함(법 제24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40조 근거)

5) 안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안 제31조~제36조)

- 탄소중립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운동 지원,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을 규정함(법 제65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근거)

6) 안 제6장 보칙(안 제37조~제39조)

-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표창 등을 규정함(법 제79조 근거)

다. 검토의견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탄소중립 정책 관련 계획 및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9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 제정 현황(2022. 11월 기준)**
 - 서울시 및 9개 자치구(강남, 강북, 구로, 동대문, 동작, 서대문, 성동, 영등포, 은평)에서 조례 제정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군·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시·군·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